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9. 5.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8월 23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30일

라. 상정일자 :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 9.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춘은)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체육시설(스포츠센터) 이용에 따른 감면규정을 신설·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및 확대
 - 다자녀 가정 구성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안 제9조제2항제5호, [별표2 제 6호 마목])
 - 장기등록회원에 대한 감면기준 확대([별표2제5호])

- 사용료 선납에 따른 사용료 감면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리
 - 조례 제8조(사용료의 징수)제2항 중 “별표 2 및 별표 3”을 “별표 2”로, 제3항을 “대림운동장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로 변경
(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 기타 용어정비
 -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 체육시설(안 제1조)
 - 정의는 다음 각 호와 → 뜻은 다음과(안 제2조)
 - 각호의1 → 각 호의 어느 하나(안 제4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목)

- 이 개정 조례안은, 구민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 구성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장기등록 회원에 대한 감면기준을 확대하여 이용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체육시설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9조 제2항 제5호 및 별표2의 제6호 마목에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로 영등포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별표2 제5호는 “6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를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 감면할 수 있다”로 영등포스포츠센터 장기등록회원에 대한 감면기준을 확대하였음.
- 검토결과, 이용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체육시설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사용료 감면액은 총 5억3천만원이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이용료 30% 감면 신설에 따른 감면 예상액은 약 6천만원, 장기회원 감면 확대에 따른 감면 예상액은 약 7백70만원으로 도합 6천7백70만원이 추가로 재정수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수익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249 호 |
|----------|---------|

제출연월일 : 2017.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다자녀 가정에게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체육시설 장기등록 회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을 확대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체육시설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안 제9조)
- 나. 체육시설 장기등록 회원에 대한 감면기준 확대 (안 별표2)
-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7.7.27. ~ 8.14. / 18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체육시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별표 2 및 별표 3”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림운동장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구청장은 다음”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제3조 관련)

| 시 설 명 | 위 치 | 규 모 | 주요 시설 |
|-------------|---------------------------|---------------------------|---|
|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 영등포구 신풍로 1(신길동) |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9,131㎡ |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문화강좌실 |
|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 영등포구 국회대로 615(당산동4가) |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6,674㎡ |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문화강좌실 |
|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 영등포구 가마산로31길 16(대림동) | 16,498㎡ |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축 구 장 1면 테 니 스 장 3면 |
| 양평동 체련장 | 양평동5가 128-1 | 1,628㎡ | 농 구 장 1면 |
| 대방천 체련장 | 신길3동 376 | 4,243㎡ | 게이트볼장 1면 |
| 당산2동 배드민턴장 | 당산동6가 91-34 | 564㎡ | 배드민턴장 4면 |
| 양평2동 배드민턴장 | 양평동5가 128 | 240㎡ | 배드민턴장 3면 |
| 도림동 배드민턴장 | 도림동 265 | 320㎡ | 배드민턴장 4면 |
| 안양천 체육시설 |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동) | 30,508㎡ |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 구 장 1면 축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 |
| | 오목교~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1동) | 5,300㎡ | 게이트볼장 7면 축 구 장 2면 |
| | 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2동) | 17,448㎡ | 축 구 장 1면 축 구 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
| 도림천 체육시설 | 둔치체육시설(도림동) | 540㎡ | 농 구 장 1면 |
| 유수지 체육시설 | 도림동 유수지 | 14,000㎡ |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
| | 대림3동 유수지 | 16,128㎡ |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
| | 신길 유수지 | 3,679㎡ | 조깅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

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 개인사용료

(단위 : 원)

| 사용료 구분 | 대 상 | 기본사용료 (1회) 상한 |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 | | | | |
|--------|---|------------------|-------------------------|--------|--------|--------|--------|--------|
| | | | 주1회 | 주2회 | 주3회 | 주4회 | 주5회 | 주6회 |
| 수영장 | 성 인 | 4,000 | 16,000 | 32,000 | 48,000 | 56,000 | 64,000 | 72,000 |
| | 청소년 | 3,000 | 12,000 | 24,000 | 36,000 | 42,000 | 48,000 | 56,000 |
| | 어린이 | 2,500 | 10,000 | 20,000 | 30,000 | 35,000 | 40,000 | 45,000 |
| 골프 연습장 | 성 인 | 6,000 | 월 120,000 | | | | | |
| | 청소년 (어린이) | 5,000 | 월 100,000 | | | | | |
| 체력 단련장 | 성 인 | 2,500 | 월 50,000 | | | | | |
| | 청소년 (어린이) | 2,000 | 월 40,000 | | | | | |
| 체육관 | 성 인 | 3,000 | | | | | | |
| | 청소년 | 2,000 | | | | | | |
| | 어린이 | 1,500 | | | | | | |
| 비 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 | | | | | | | |

○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구분 \ 사용료 | 대 상 | 대관료 | 비 고 |
|----------|--|---------|---|
| 체육관 | 체육경기 | 150,000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
| | 기 타 | 300,000 | |
| 수영장 | 체육경기 | 280,000 |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0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
| | 기 타 | 560,000 | - 동절기(11월~2월) 수영장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 비 고 | <p>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p> <p>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p> <p>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p> <p>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p>3. 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p> <p>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p> <p>나.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p> <p>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p> |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u>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국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 ----- ----- <u>체육시설</u> ----- ----- ----- ----- -----.</p>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5. (생략)</p> | <p>제2조(정의) ----- ----- <u>뜻은 다음과</u> -----.</p> <p>1. ~ 5. (현행과 같음)</p> |
| <p>제4조(사용허가) ① (생략)</p> <p>② <u>사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u></p> <p>③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u></p> <p>1. ~ 3. (생략)</p> | <p>제4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사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후단 삭제></p> <p>③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 3. (현행과 같음)</p> |
| <p>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생략)</p> <p>② <u>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 <p>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현행과 같음)</p> <p>② ----- -----<u>별표 2에서</u> ----- ----- -----.</p> |

③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④、⑤ (생략)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 ③ (생략)

④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나, 제3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

③ 대림운동장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별표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제3조 관련)

| 시 설 명 | 위 치 | 규 모 | 주요 시설 |
|------------|-------------------------|-----------------------|---|
|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 신길동 426-3 (신길근린공원 내) | 지하2층/지상 3층 연면적 9,131㎡ |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문화강좌실 |
|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 대림3동 780 | 16,498㎡ |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축 구 장 1면 테 니 스 장 3면 |
| 양평동 체련장 | 양평동5가 128-1 | 1,628㎡ | 농 구 장 2면 |
| 대방천 체련장 | 신길3동 376 | 4,243㎡ | 게이트볼장 1면 |
| 당산2동 배드민턴장 | 당산동6가 91-34 | 564㎡ | 배드민턴장 4면 |
| 양평2동 배드민턴장 | 양평동5가 128 | 240㎡ | 배드민턴장 3면 |
| 도림동 배드민턴장 | 도림동 265 | 320㎡ | 배드민턴장 3면 |
| 안양천 체육시설 |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 (문래동) | 30,508㎡ |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 구 장 1면 축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 |
| | 오목교~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 (양평1동) | 5,300㎡ | 배드민턴장 5면 게이트볼장 4면 축 구 장 2면 |
| | 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 (양평2동) | 17,448㎡ | 축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 |
| 도림천 체육시설 | 둔치체육시설 (도림동) | 540㎡ | 농 구 장 1면 |
| 유수지 체육시설 | 도림동 유수지 | 12,105㎡ |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
| | 대림3동 유수지 | 11,450㎡ |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
| | 신길 유수지 | 2,670㎡ | 조깅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제3조 관련)

| 시 설 명 | 위 치 | 규 모 | 주요 시설 |
|-------------|-------------------------|-----------------------|---|
|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 영등포구 신풍로 1 (신길동) | 지하2층/지상 3층 연면적 9,131㎡ |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문화강좌실 |
|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 영등포구 국회대로 615 (당산동4가) | 지하3층/지상 5층 연면적 6,674㎡ |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문화강좌실 |
|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 영등포구 가마산로31길 16(대림동) | 16,498㎡ |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축 구 장 1면 테 니 스 장 3면 |
| 양평동 체련장 | 양평동5가 128-1 | 1,628㎡ | 농 구 장 1면 |
| 대방천 체련장 | 신길3동 376 | 4,243㎡ | 게이트볼장 1면 |
| 당산2동 배드민턴장 | 당산동6가 91-34 | 564㎡ | 배드민턴장 4면 |
| 양평2동 배드민턴장 | 양평동5가 128 | 240㎡ | 배드민턴장 3면 |
| 도림동 배드민턴장 | 도림동 265 | 320㎡ | 배드민턴장 4면 |
| 안양천 체육시설 |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 (문래동) | 30,508㎡ |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 구 장 1면 축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 |
| | 오목교~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 (양평1동) | 5,300㎡ | 게이트볼장 7면 축 구 장 2면 |
| | 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 (양평2동) | 17,448㎡ | 축 구 장 1면 축 구 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
| 도림천 체육시설 | 둔치체육시설 (도림동) | 540㎡ | 농 구 장 1면 |
| 유수지 체육시설 | 도림동 유수지 | 14,000㎡ |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
| | 대림3동 유수지 | 16,128㎡ |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
| | 신길 유수지 | 3,679㎡ | 조깅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

[별표 2]

구민체육센터 개인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원)

| 사용료 구분 | 대 상 | 기본사용료 (1회) 상한 |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 | | | | |
|--------|---|---------------|-------------------------|--------|--------|--------|--------|--------|
| | | | 주1 회 | 주2 회 | 주3 회 | 주4 회 | 주5 회 | 주6회 |
| 수영장 | 성 인 | 4,000 | 16,000 | 32,000 | 48,000 | 56,000 | 64,000 | 72,000 |
| | 청소년 | 3,000 | 12,000 | 24,000 | 36,000 | 42,000 | 48,000 | 56,000 |
| | 어린이 | 2,500 | 10,000 | 20,000 | 30,000 | 35,000 | 40,000 | 45,000 |
| 골프 연습장 | 성 인 | 6,000 | 월 120,000 | | | | | |
| | 청소년 (어린이) | 5,000 | 월 100,000 | | | | | |
| 체력 단련장 | 성 인 | 2,500 | 월 50,000 | | | | | |
| | 청소년 (어린이) | 2,000 | 월 40,000 | | | | | |
| 체육관 | 성 인 | 3,000 | | | | | | |
| | 청소년 | 2,000 | | | | | | |
| | 어린이 | 1,500 | | | | | | |
| 비 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6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 | | | | | | | |

[별표 2]

영등포스포츠크센터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 개인사용료

(단위: 원)

| 사용료 구분 | 대 상 | 기본사용료 (1회) 상한 |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 | | | | |
|--------|---|---------------|-------------------------|--------|--------|--------|--------|--------|
| | | | 주1 회 | 주2 회 | 주3 회 | 주4 회 | 주5 회 | 주6회 |
| 수영장 | 성 인 | 4,000 | 16,000 | 32,000 | 48,000 | 56,000 | 64,000 | 72,000 |
| | 청소년 | 3,000 | 12,000 | 24,000 | 36,000 | 42,000 | 48,000 | 56,000 |
| | 어린이 | 2,500 | 10,000 | 20,000 | 30,000 | 35,000 | 40,000 | 45,000 |
| 골프 연습장 | 성 인 | 6,000 | 월 120,000 | | | | | |
| | 청소년 (어린이) | 5,000 | 월 100,000 | | | | | |
| 체력 단련장 | 성 인 | 2,500 | 월 50,000 | | | | | |
| | 청소년 (어린이) | 2,000 | 월 40,000 | | | | | |
| 체육관 | 성 인 | 3,000 | | | | | | |
| | 청소년 | 2,000 | | | | | | |
| | 어린이 | 1,500 | | | | | | |
| 비 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 | | | | | | | |

○ 전용사용료

(단위:원)

| 사용료 구분 | 대상 | 대관료 | 비 고 |
|--------|---|---------|---|
| 체육관 | 체육경기 | 150,000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
| | 기타 | 300,000 | |
| 수영장 | 체육경기 | 280,000 |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0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
| | 기타 | 560,000 | - 동절기(11월~2월) 수영장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 비 고 | <p>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p> <p>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p>3. 영등포 스포츠센터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p> <p>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p> | | |

[별표 4]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제8조제3항 관련)

〈삭제〉

| 사용료 구분 | 대상 | 대관료 | 비 고 |
|-----------|--|---------|---|
| 체육관 | 체육경기 | 150,000 |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
| | 기타 | 300,000 | |
| 수영장 | 체육경기 | 280,000 |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0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
| | 기타 | 560,000 | - 동절기(11월~2월) 수영장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 비고 | <p>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p> <p>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p>3.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p> <p>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p> | | |